

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<유형②:사후매칭> 예산 작성 방법 FAQ

2025. 1. 6.(월) /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<유형② 사후 매칭 방식: 공연장 대상>의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예산 작성 방법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,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FAQ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공모기간 연장	'24.12.23.(월) 9:00 ~ '25.1.6.(월) 18:00	'24.12.23.(월) 9:00 ~ '25.1.9.(목) 18:00

I. 주요 사항

Q1. 자부담금 책정 시, 지원결정액의 10%~30%를 책정하면 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장은 총 사업비(자부담금+국고보조금)의 10%~30%을 자부담금으로 책정해야 합니다.

* 총 사업비(100%) = 자부담금 10~30% + 국고보조금 70~90%

예) 지원결정액 50,000,000원인 무용A 신청 시, 자부담금 5,560,000원 책정

[참고] 장르별 자부담 비율

자부담 비율	30%	10%
장르	뮤지컬	무용, 연극, 음악, 전통

Q2. 공연단체에 지급하는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는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해야 하나요?

→ 그렇지 않습니다.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는 '사후매칭을 위한 공연단체 최종 선정 결과(2024.12.20.공시) 내 지원결정액(이하 지원결정액)' 만큼 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공동편성할 수 있습니다.

단, 총 사업비 내 지원결정액만큼의 국고보조금은 편성·신청하셔야 합니다.

* 3페이지 [III. 작성 예시 참고]

Q3. 지원결정액을 초과하여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?

→ **그렇지 않습니다.** 공연장이 공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용역비의 최대금액은 '지원결정액'입니다.

Q4. 총 사업비(자부담금+국고보조금) 전액을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로만 편성해도 되나요?

→ **그렇지 않습니다.**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외에도 본 사업에서 필수로 지정한 '회계검증수수료' 등을 편성하셔야 합니다.

더불어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마케팅비·홍보대행용역비,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, 부대행사 용역비 등 공연이 지역 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권장드립니다.

II. 작성 예시

[지원결정액 32,000,000원(2일 2회 기준) 음악 공연의 예산 편성]

○ 재원 조성계획

구 분		금 액	비율(%)	확정 여부
자부담금	신청주체(공연장) 자체부담금	14,900,000	32%	확정
	후원금, 투자금 등	0	00.0%	미확정
보 조 금	국고보조금(문화체육관광부)	32,000,000	68%	확정
합계		46,900,000	100.0%	

○ (가능) 집행계획 예시 1)

목	세목	세부 항목	산출근거	총사업비(원)		
				자부담(A)	보조금(B)	합계(A+B)
공연비	일반 수용비	홍보비	○ 프로그램북 제작비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 ○ 현수막 제작비 - 500,000원x6식=3,000,000원	5,900,000		5,900,000
		회계검증 수수료	○ 수수료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	2,000,000		2,000,000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○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 -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		32,000,000	32,000,000
		대행용역비	○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 ○ 부대행사 용역비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	7,000,000		7,000,000
합계				14,900,000	32,000,000	46,900,000

○ (가능) 집행계획 예시 2)

목	세목	세부 항목	산출근거	총사업비(원)		
				자부담(A)	보조금(B)	합계(A+B)
공연비	일반 수용비	홍보비	○ 프로그램북 제작비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 ○ 현수막 제작비 - 500,000원x6식=3,000,000원	5,900,000		5,900,000
		회계검증 수수료	○ 수수료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	2,000,000		2,000,000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○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 - 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	2,000,000	30,000,000	32,000,000
		대행용역비	○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 ○ 부대행사 용역비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	5,000,000	2,000,000	7,000,000
합계				14,900,000	32,000,000	46,900,000

○ (불가능) 집행계획 예시 1)

-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로만 총 사업비 편성 불가
- 지원결정액만큼의 국고보조금 편성 필수

목	세목	세부 항목	산출근거	총사업비(원)		
				자부담(A)	보조금(B)	합계(A+B)
공연비	일반 수용비	홍보비	○ 프로그램북 제작비 - 000,000x1식=0,000,000원 ○ 현수막 제작비 - 000,000x1식=0,000,000원	0		0
		회계검증 수수료	○ 수수료 - 000,000x1식=0,000,000원	0		0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○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 - 32,000,000원x1식=32,000,000원	5,000,000	27,000,000	32,000,000
			○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- 000,000x1식=0,000,000원 ○ 부대행사 용역비 - 000,000x1식=0,000,000원	0		0
합계				5,000,000	27,000,000	32,000,000

○ (불가능) 집행계획 예시 2)

- 지원결정액을 초과하는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편성 불가

목	세목	세부 항목	산출근거	총사업비(원)		
				자부담(A)	보조금(B)	합계(A+B)
공연비	일반 수용비	홍보비	○ 프로그램북 제작비 - 2,900,000원x1식= 2,900,000원	2,900,000		2,900,000
		회계검증 수수료	○ 수수료 - 2,000,000x1식=2,000,000원	2,000,000		2,000,000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○ 공연단체 대상 공연 용역비 (2일 2회) - 37,000,000원x1식=37,000,000원	5,000,000	32,000,000	37,000,000
			○ 부대행사 용역비 - 5,000,000x1식=5,000,000원	5,000,000		5,000,000
합계				14,900,000	32,000,000	46,900,000